

음악대학 공간조정소위원회 내규

시행일 : 2011.9.26.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음악대학이 관할하는 공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음악 대학 공간조정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학장, 각 학과장, 기악주임교수, 음악대학 학생회장, 행정실장으로 구성하고,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- 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, 위원장은 행정실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- ④ 간사는 위원회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,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음악대학 건물 내 각 실의 주요 용도 변경
- 2. 강의실·교수연구실 및 각 학과(전공) 실기 연습실 등 음악대학 필요 공간 배정원칙의 제정 및 개정
- 3. 신임교원 충원에 따른 필요한 공간의 사전심의 및 교수연구실 배정
- 4. 각종 연구 프로젝트 및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공간의 사전심의 및 배정
- 5.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공간조정에 관한 사항

제4조(회의)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재적위원 1/3 또는 전임교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- 3. 기타 공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

제5조(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건물 내의 용도변경) ① 각 공간관리 책임자는 공간 내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로 용도변경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심의가 끝난 공간조정 결정 결과를 자체 없이 각 공간관리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공간의 이용기준 및 이용절차) 음악대학 공간의 이용기준 및 이용절차는 <별표 1>과 같다.

제9조(보칙)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공간조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음악대학 공간의 이용기준 및 이용절차

- 공동이용 공간
 1. 음악대학관 현관, 로비, 계단 등의 공동이용 공간은 교직원과 학생 등 음악대학 전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.
 2. 위의 원칙에 저촉되는 이용행위는 제지받을 수 있으며 당해 설치물은 임의로 철거될 수 있다.
 3. 음악대학 구성원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, 집기,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- 교수연구실
 1. 교수연구실은 음악대학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2. 교수연구실의 배정은 선임, 연장자 순으로 한다.
 3. 교수연구실은 공간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共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격의 칸막이를 설치 할 수 도 있다

- 학생회실, 학회실 기타 동아리실
 1.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이용을 배제하는 독점적인 공간이용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.
 2. 음악대학관 안팎의 각종 게시물, 부착물은 전체 공간과의 조화 및 미관을 고려하여 학교의 기준에 따른다.
 3. 학생들은 필요한 시설, 장비의 설치를 학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대한 이를 수용한다.
- 음악대학 공간의 이용절차
 1. 음악대학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실에 신청하여야 한다.
 2. 행정실은 음악대학 공간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집행한다.